

부산지방법원 2021. 4. 14 선고 2020나46585 판결 [점유회수]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 2021. 4. 14 선고 2020나46585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3. 31 선고 2019가단20104 판결

전 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 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

담당변호사 이정희, 정세진

변론종결 2021. 3. 17.

판결선고 2021. 4. 14.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3. 31. 선고 2019가단20104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인도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소가 선행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이유 없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9. 3. 14.경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으로 불법점유하고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라 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는 패소판결이 2020. 5. 29.경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두 개의 소송물이 동일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는 경우에도 청구취지 내지 청구원인이 서로 다르다면 별개의 소송물인바(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5다9760, 9777 판결 등 참조), 위 전소의 소송물은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반환청구권이고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은 점유권에 기한 점유물반환청구권으로 별개의 소송물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은명, 판사 오영두, 판사 김상현

별지